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6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2조, 제23조,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기준"이라 함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2.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7. "성과배분"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8. "성과보증"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성과배분계약"이라 함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말한다.
10. "성과보증계약"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말한다.
11.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제4조(적용기준)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9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기술인력 등록을 위한 직무분야 및 종류의 인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5]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중 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

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인정은 1종의 경우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에너지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하며, 2종의 경우에는 건축, 기계, 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한다.

3. 해당 장비의 등록기준은 각 해당 장비가 이 규정 [별표1]에 규정된 장비의 기능 및 용도를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등록장비중 1대의 장비가 등록기준에서 정한 장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경우, 각각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적용기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2]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검토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 이사장의 보안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교부 등) 공단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처리기간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처리기간 산정은 공휴일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제9조(등록기준 유지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3.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③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휴업, 폐업, 업종변경 및 기타 사유로 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감사 등

제10조(영업실적 보고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8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배분 또는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단직원신분증(공단이사장 발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2.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총사업금액을 회수하는 기간

제13조(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때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때
7.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아니한 때
8.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제4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 등

제14조(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제5장 성과보증사업

제15조(진단보고서 작성, 제출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설치 전·후 대상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자금추천 신청을 하는 때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ESCO협회의 장에게 실적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보증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목표절감량(액)의 9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 6장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증

제17조(우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증)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에너지사용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인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등록된 업체가 변경 또는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